[중앙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 - 28호]

중앙사회서비스원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1. 모집 직위 및 자격요건

가. 모집 직위

직 위	모집 인원	담당 직무내용	임 기
이사 (비상임)	9명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임명일부터 2년
감사 (비상임)	2명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나. 응모 자격

○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직 위	자격요건
이사 (비상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직 위	자격요건
감사 (비상임)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서비스 분야'는「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정의)에 따름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출 서류

가. 지원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 소개서(A4용지 4매 이내)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직무 수행 계획서(A4용지 4매 이내)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서류 등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발행) 1부
-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전문학사 이상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소정 서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www.kcpass.or.kr > 알림마당 >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6. 8. 21.(금) ~ '26. 9. 7.(월)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26395142@kcpass.or.kr) 접수

① 방문 제출은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9~18시) 내 접수
② 봉투겉면에 '중앙사회서비스원 비상임임원 지원서류' 기재
③ 이메일·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기한 도착분('26.9.7.18시)에 한함. 배송 지연 및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유선으로 지원서류 도착 여부 확인 바람 ☎ 02-2271-9031)

다. 접 수 처: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기획부)

4. 심사방법 및 결과 통보

○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 또는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26395142@kcpass.or.kr)
- (반환방법)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

라. 합격자 결정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경영기획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271-9031)

※ (문의시간)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참고 **결격사유 관련 규정 및 법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 략)